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882
----------	------

2021년 12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10월 15일 박기재 의원 외 44명 발의
2.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3. 상정일자 : 제303회 정례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12월 17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박기재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수탁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통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또한 향후 구사회복지협의회 설립 확대, 서울형 복지모델 개발 및 역할 수행을 위한 사회복지협의회 예산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조)
-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시장은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음.
- 제정안은 6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례의 목적(안 제1조)은 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시장의 책무(안 제2조)로 사회복지협회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지원사업(안 제3조)으로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협의회와 자치구 사회복지협의회 간 제1호 관련 협력사업,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명시하고, 예산지원(안 제4조)은 시장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안 제5조)에 따라 시장이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조례안의 조문 배열>

제1조(목적)	제4조(예산지원)
제2조(시장의 책무)	제5조(지도·감독)
제3조(지원사업)	제6조(시행규칙)
	부 칙

2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조례안의 필요성

- 사회복지협의회는 '99년 1월에 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임.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②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제7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2. 1. 26.>

④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업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2.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5.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6.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7.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8.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9. 시·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도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0.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1.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사회복지협의회는 2실(행정회원관리실, 정책협력실), 3센터(사회복지정보센터, 사회공헌센터, 에너지복지시민기금), 1수탁사업(광역푸드뱅크센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총 35명임. 법인구성은 이사 22명, 감사 2명, 회원 496명(단체회원 438명, 개인회원 58명)로 이루어져 있음.



〈그림〉 서울사회복지협의회 조직도

〈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부서별 인력현황

(2021.12.13. 기준)

구분	인원
회장(비상근 명예직)	1명
사무총장(상근직)	1명
행정회원관리실	4명
정책협력실	5명
서울시사회복지정보센터	4명
서울사회공헌센터	4명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3명
서울특별시 광역푸드뱅크센터	13명
총계	35명

- 사회복지협의회의 주요기능은 법 제33조에 따른 사항으로 사회복지 시설·기관, 관련 단체 협의조정사업, 사회복지교육원 운영, 조사연구 사업, 정책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주요기능

1. 사회복지시설·기관, 관련 단체 협의·조정

-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서울사회복지걷기대회, 사회복지 신년인사회, 사회복지직능위원회, 사회복지법인 소통나눔콘서트, 서울복지상황지도, 구협의회 육성사업

2.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 사회복지정책간담회, 서울복지포럼, 서울복지연구원, 정책위원회 운영

3.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훈련

- 직급별 교육, 직무별 교육, 전문교육, 재무·회계교육, 소규모복지시설종사자 교육, 시설안전 관리교육

4. 서울특별시 광역푸드뱅크센터 운영

- 서울특별시 광역푸드뱅크센터 운영, 기부활성화사업, 푸드뱅크·마켓 사업평가, 실무자교육, 식품기부 후원자 감사의 밤

5.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 서울복지정보망(s-win) 운영, VMS인증센터 지정 및 인증요원교육, 전문자원봉사단 운영, 자원봉사관리자교육

6. 시민 복지수요에 기반 한 민간자원개발 및 연계

- 서울사회공헌센터 운영, 민간자원개발 및 연계, 사회공헌정보공유사업

7. 시민 참여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지원을 통해 에너지 나눔의 가치 실현

-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운영, 모금사업,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

- 현재 17개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중 서울시 등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표〉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 제정 현황

시도	조례명	제정일
경상남도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2012.01.12
경기도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2014.05.02
전라남도	전라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2019.03.1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2019.09.3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2020.04.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7.10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2020.07.14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2020.10.05
충청북도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2021.02.10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	2021.07.14
경상북도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2021.11.01

나. 총칙규정(안 제1조~안 제3조)

- 본 조례안은 총칙규정에서 목적(안 제1조)과 시장의 책무(안 제2조), 지원 사업(안 제3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조가 담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목적은 법 제33조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으며, 조례안 제3조의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사업은 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따른 사항임.
- 상위법 상 사회복지협의회 설립근거 및 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 제정 목적 및 지원사업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예산지원 및 지도·감독(안 제4조~안 제5조)

- 조례안 제4조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인 바, 이는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한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또한 조례안 제5조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이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체계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됨.

라. 집행부의견

- 집행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한 사항인 바, 이에 조례를 제정하는 원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협의회에 지원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별도 쟁점사항은 없음.
- 사회복지협의회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을 추진하여 민간주도의 사회복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박기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882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10월 15일

발 의 자 : 박기재, 강대호, 권수정,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기대, 김기덕, 김인제,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태수, 김평남, 김화숙,
김희걸, 문장길,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양민규,
오중석, 유정희, 이광성,
이광호, 이상훈, 이영실,
이준형, 이태성, 임종국,
장상기,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조상호, 최 선,
최웅식, 홍성룡, 황규복
의원(45명)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수탁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통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또한 향후 구사회복지협의회 설립 확대, 서울형 복지모델 개발 및 역할 수행을 위한 사회복지협의회 예산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다. 시장은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의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자치구 사회복지협의회 간 제1호 관련 협력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